

##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기준

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및 관련정보를 생명자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또는 각 부처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하며, 기탁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원명	기준내용
미생물자원	1. 동결보존 바이알 2개또는 활성배양체(active culture) 1개 (*조류(Algae)는 사면배지(slant media)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2개 또는 액체배지(broth media)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1개)
동물자원	1. 사람세포, 융합세포, 동물세포, 줄기세포 : 활성배양체(active culture) 2개 또는 동결 Vial 2개 2. 설치류 : 정자, 수정란 또는 성체(협의) 3. 수정란 : 300개 이상 4. 기타 동물자원 : 수정란, 정자 또는 성체(협의)
식물자원	1. 식물세포주 : 활성배양체(active culture) 2개 2. 식물종자 : 건조종자 300개 (불가피한 경우, 사전 연락 요망) 3. 식물유래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(transformant) : 동결보존 vial 2개와 활성 배양체 1개 4. 식물추출물 : 최초 추출물 1g 이상
유전체자원	1. 유전자 및 genomic DNA가 삽입된 미생물 또는 세포(transformant): 동결보존 vial 2개또는 활성배양체(active culture) 1개 2. DNA 및 RNA: 50μg 이상